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26 선고 2014가합58246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15. 5. 14.

판결 선고 2015. 5. 2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,726,109원 및 그 중 174,324,839원에 대하여 2014. 8. 26.부터 2015. 5. 9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2010. 6. 23.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 보증금액 190,000,000원, 보증기한 2011. 6. 23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,000,000원을 변제기 2011. 6. 23.로 정하여 대출받았다(후에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71,000,000원, 보증기한은 2014. 6. 24.까지로 최종변경되었다).

나.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, 그 금액과 이행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%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, 피고 B,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피고 회사가 2014. 4. 18.경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. 8. 26.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고의 대출원리금 174,324,8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채권보전비용으로 591,520원을 지출한 후 그 중 190,250원을 회수하였다.

라.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 174,726,109원(=174,324,839원 + 591,520원 - 190,25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4,324,8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. 8. 2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최종 송달된 2015. 5. 9.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이은희

판사최다은

판사김준혁